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266(2021. 3. 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자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라며,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시·도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
 2.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주무관	김수영	행정사무관	김현정	건강정책과장	전결 2021. 3. 15. 고형우
협조자					
시행	건강정책과-2021	(2021. 3. 15.)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3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858	팩스번호	044-202-3937	/ yukson98@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